

利涉大川 -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 부쳐

안 주 엽*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은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수준을 정하는 때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의 수준과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노와 사의 상충되는 주장을 논하는 장이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인데, 노, 사, 공을 대리하는 27인의 위원들이 마주 앉아 소위 ‘밀당’을 하며 각자의 논리에 따라 경제적 환경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협상과정을 거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통상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말까지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데,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 밤늦게까지 ‘끝장토론’을 한다. 2014년에는 6월 27일 새벽 5시에 타결되어 2008년 이후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켰으니, 노·사의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하여 2006년 3,100원에서 매년 2.75~12.3% 인상되어 2015년에 5,580원에 이르렀는데, 때에 따라 그 상승폭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 영향률(임금근로자 중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4.6%에 이르고 있으니, 상당수 근로자가 저임금을 받고 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번 호는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와 사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6월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는 두 개의 글을 담고 있다. 첫 번째 글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의 추이 및 이들 구성의 변화(2007년과 2014년)와 일자리 변동의 관계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매년 8월)를 이용하여 살펴보고 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12%를 전후한 수준인데, 60세 이상과 15~24세가 44%와 29%, 고졸 미만 저학력자가 72%,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30% 가까이 차지한다. 단순노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jyahn@kli.re.kr).

무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가 38%와 26%로 저숙련 직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2007~2014년 단순노무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두 번째 글에서는 기업의 시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시나리오별로 인건비 상승률과 이에 따른 인건비 비중의 상승률을 업종별로 계산하고 있다. 음식숙박업에서 현재의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면 인건비가 4.3% 상승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이 평균임금보다 3%포인트 더 인상되면 인건비 상승률은 추가적으로 0.8%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서는 인건비 비중이 0.45~1.20%포인트 증가하고, 최저임금 상승률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5%포인트 높으면 인건비 비중은 0.11~0.26%포인트 높아지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3월 부총리는 내수 진작 등을 통한 임금주도 성장론에 입각하여 임금의 적정 수준으로의 인상과 최저임금의 빠른 속도 인상을 언급하였는데, 사용자 측은 우리의 최저임금이 결코 낮지 않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난색을 표한 반면 노동계는 이를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의 수준을 논의하는 요즘, 일부 언론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외국의 저명인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으려는 취지의 글을 쓰고 있고, 다른 일부 언론은 ‘경제학의 아버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했을까?’, ‘최저임금 13년 모아야 금배지 1년 세비’, ‘미국은 최저임금 인상 중’ 등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쓰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1년에 1만 4,500달러보다 적게 받고 ...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못 하겠다면 ... 수백만 미국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도록 투표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행정명령을 통하여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는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0달러 10센트로 설정하였고, 최근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시간당 9달러인 현행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수준은 높아진 반면, 둔화하는 고용 증가와 저조한 성장률 전망을 이유로 드는 경영계의 인상 억제 노력 역시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니 올 최저임금 논의과정이 험난함은 명약관화하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노와 사 모두에게 상당히 불만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어찌할 것인가? 그 어느 때보다 노와 사의 양보와 공익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周易에 利涉大川(이섭대천),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는 말이 있다. 큰 강에 가로막힌 상황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대원칙을 세우는 다리를 놓음으로써 타개한다면, 지금은 비록 흡족지 못하더라도 최저임금 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노·사·공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KLI]